## 지평지성 헌법소송 Newsletter

| 2012년 4월 제1호 |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 : 인용결정

김영수 변호사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구구치소 장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 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는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는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 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거꾸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인 점, 공범 등이 없는 경우 내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거나 수형자 용 종교집회실을 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 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침해의 최소 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 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 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 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2. 다운로드: 2009헌마5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위헌확인 등

1